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31
----------	------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7일 김용석 의원외 25명
2.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2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도봉)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이 자치구 사무이지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 3) 기타사항 :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나 행사에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상의 불편을 줄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의무 규정(안 제6조)

-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시비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라는 내용을 신설한 바,
 - 이는 최근 도심 촛불집회 등에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개방화장실 등 확대, 긴급의료, 안전요원 배치, 119 비상 대기, 대중교통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화장실 이용에 따른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 대규모 행사 등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¹⁾에서는 구청장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²⁾하고 있어, 원인행위자인 주최측이 집회나 행사 참가자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촛불 집회에서 최대 16개동³⁾까지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참가 인원으로 이동화장실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
 - 또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소유자에게 집회나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시비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이동화장실 1개동은 통상 여자화장실 대변기 4칸, 남자화장실 대변기 2칸, 소변기 3칸으로 구성됨.

- 다만,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대규모 집회 및 행사’의 개념이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시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주요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를 중심 광화문부터 시청 주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210개소인 것에 반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총 15개소임.
- 한편,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원금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16년 기준 약 1,150개소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비 5억원과 구비 4억 5천만원을 합한 총 9억 5천만원으로 개소당 지원받는 금액이 월평균 68,800원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부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7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이순자·최웅식
한명희·이윤희·전철수·김제리
서영진·김진철·김문수·박준희
박래학·유 용·박호근·박기열
김미경·유동균·이병해·오봉수
김구현·김동윤·박진형·김정태
김광수(도봉)·신언근·유광상 의원
(2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이 자치구 사무이지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각호”를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무) 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6조(의무) -----</p> <p>--- <u>각 호</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u></p>